

검 토 보 고 서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5일

3. 제안이유

충북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‘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’, ‘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’을 추가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신규사업 추가(안 제6조)

-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
-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에 급변하는 인구구조·산업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를 고려하여 ‘신·재생에너지’와 ‘스마트농업’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.
- 2005년 충북개발공사 조례 시행 당시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를 타 시도 개발공사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4조는 “정부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,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장려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함.
- 「제5차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기본계획」(2020.12.)에서는 최우선 추진전략으로 “보급혁신”을 채택하고, 참여주체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1조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,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3조는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사업의 범위에 ‘신·재생에너지’와 ‘스마트농업 생산물’에 관한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,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조문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 - 안 제6조제11호에 ‘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’을 추가함.
 - 안 제6조제12호에 ‘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’을 추가함.
- 각 조문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예고(’ 23.8.29. ~ 9.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조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[붙임]

◎ 타 시도 개발공사 조례 현황

타 시도 개발공사 조례 中 신·재생에너지 / 스마트 농산물 관련 사업 조문 현황

구분	개발공사	관련 조문
신·재생 에너지	대전	신·재생에너지 관련 사업
	경북	신·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 및 보급
	전북	신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 및 보급
	전남	신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 및 보급
	경남	신재생에너지사업
농업 관련	경남	국내외 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현지 농장운영 및 유통 판매사업
	제주	- 감귤 등 농산물의 가공사업을 위한 감귤복합처리 가공 단지 조성 및 운영 - 제주의 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, 주류사업
	충남	비료 및 사료의 생산, 판매 관련사업(정관)

[출처] 타 시도 개발공사 조례 참조